

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7년 11월 26일

나. 회부일자 : 1997년 11월 26일

3. 제안이유

- 공유재산중 잡종재산의 매각에 있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
- '95년 9월 22일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의 2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) 제4호를 신설한 바 있으나
-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"공공기관의 범위"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
- 현행 개별법규에도 "공공기관"에 대한 통일된(확립된) 개념이 없어 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

4. 주요골자

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의 2 제4호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)를 삭제.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조문중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"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재산을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할때"의 규정을 삭제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첨 부

-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